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04316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75번지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메일 : antipoorkr@gmail.com 홈페이지 : antipoor.jinbo.net

수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조	사회부
발신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문의	빈곤사회연대 정성철(010-7797-8913)
일자	2017. 03. 17(금)		
제목	[보도자료] <빈곤문제 1호 과제,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_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 지지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에 경의를 포함합니다.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의 1000만 촛불은 일상으로 돌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로서 적폐청산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을 결정짓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만연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생활고를 비관한 죽음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으며, 두명 중 한명의 노인이 빈곤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4. 이에 우리는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빈곤문제 제1호 과제로 명하고,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가 함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3월17일(금) 오전10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에서 갖습니다.

5. 귀 언론사에 많은 취재 요청드립니다.

첨부1. 기자회견 순서

첨부2. 기자회견문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계획

첨부4.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빈곤문제 1호 과제,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 지지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3월 17일(금) 오전10시
-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사회: 윤애숙(빈곤사회연대)

- 지지발언1.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
- 지지발언2. 최종진(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
- 지지발언3. 유영우((사)주거연합 상임이사)
- 지지발언4. 유의선(전국빈민연합 집행위원장)
- 지지발언5. 김재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
- 지지발언6. 민선(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지지발언7. 홍유정(전국학생행진 활동가)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함께 요구한다!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낸 1000만 촛불은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일상의 촛불은 박근혜 탄핵이 끝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임을 선언했다.

####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사회!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식 할 동안 다수의 삶은 무너졌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삶의 도피처로 죽음을 선택해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소득 1분위 가구(하위10%)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6%p 낮아진 반면, 10분위(상위10%)는 3.2%늘었다. 소득이 감소함과 동시에 2,3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자를 강당하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은 두 명 중 한명의 노인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두 명 중 한명은 가난한 노후를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미래를 예고하는 불안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 부양의무자기준에 묶인 사회안전망!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이 만연해진 사회에서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미 관계에 금이 간 가족에게 본인의 처지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또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가족관계 단절사유를 작성하는 수치심을 경험해야한다. 수급자로 살아가며 가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할까봐 연락을 끊은 채로 살아가야 한다.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촛불의 염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17일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 지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1. 각계각층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선언

### ○종교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선언

-시기: 3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가)

### ○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연명

-시기: 4월 중순

-사회복지학계, 사회복지노동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학과학생, 사회복지단체활동가 등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인증샷 및 온라인 서명운동

손피켓 인증샷	<약속해줘, 부양의무제 폐지!> 인증샷 찍어서 올리기 해시태그: #약속해줘_부양의무제폐지
온라인 서명운동	범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서명운동. 4월 중순까지 모집 후 발표
기자회견	4월 20일(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지지하는 범 사회복지계 기자회견을 진행

## 2. 대통령선거 후보 입장 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입장 질의서를 3/9(목) 발송하였음.

-3/21(월)까지 답변 회신을 요청하였으며, 답변 내용은 보도자료로 발표 예정

## 3. 엽서쓰기 캠페인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엽서를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보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요?

- ※ 엽서 뒷면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한 마디를 적은 뒤 엽서를 보내고 싶은 후보자의 이름을 쓴 후 해당 후보자 이름이 적힌 봉투에 넣어주세요.
- ※ 주소 등 본인의 신상정보는 상세히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어떻게 쓰어나요?

- ※ 수합된 엽서들을 모아 대선 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 ※ 중간에 이렇듯 후보들에게 작성한 엽서의 경우 후보자 소속 당 혹은 소속 당 후보에게 함께 전달할 예정이니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예시

▶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면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고, ▶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면 노인 일자리도 늘고, ▶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면 장애인 복지도 늘고, ▶ GDP가 1%, 1%가 5% 국민 복지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합니다

귀하의 사랑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주세요!

받는이: 유권자 김부양

받는이:

대상주소: 홍길동

-거리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엽서를 받고 있음. 엽서는 각 후보 캠프에 전달 예정

-전달 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1차 전달: 3/22(수)~24(금)

-2차 전달: 4/26(수)~4/28(금)

#### **4.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제목: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일시: 3/22(수) 오전 9시

-장소: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3층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_빈곤사회연대(2017.2.7.)

1999년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처한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무런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있다.

2016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 상대적 빈곤률은 16%로, 빈곤층이 800만 명에 달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2016년 11월 기준으로 1,656,405명, 인구대비 3.2%로 빈곤층의 20%만을 포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대량의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지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 1. 부양의무자기준, 왜 문제인가?

#### (1)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 사각지대를 만든다

2012년 7월, 이씨 할머니가 거제시청 앞에서 음독자살했다. 이씨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높아졌다며 수급에서 탈락한 뒤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는 유서에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이런 법이 어딴냐’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급탈락을 비관해, 혹은 수급조차 받을 수 없는 빈곤상황에 좌절해 목숨을 잃었다. 50%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 하루 몇 천원 벌기도 힘든 폐지 수집 노동에 노인들을 내 몬 한국 사회의 잔인한 단면이다.

-2010년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17만 명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은 37,999명에 달했다. 이들은 실제 본인의 소득·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다.

-2015년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67.59%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 받는 가구는 24.38%에 불과했다.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수급신청 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받을 수 없어 신청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이미 해체되거나 복잡한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겐 수급신청조차 포기하게 하는 높은 장벽이다.

-2003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서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방안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조정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효과는 기대할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2016년 12월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사회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위한 좌담회에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는 “수요가 있지만 충족이 안 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입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를 단계적, 지속적으로 축소시켜서 종국에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2)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을 대물림하게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가난해지게 만든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2013년 12월,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아버지는 딸의 취업 후 수급탈락 소식을 듣고 자살했다. 이혼 후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홀로 지내던 그는 신부전증환자였다. 지속적인 입원과 관리가 필요한 그의 병원비는 한 달 100만원이 넘었고, 이제 막 취업한 딸에게 병원비 부담을 지울 수 없어 고민하던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은 실제 부양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를 산정한다. 이는 결국 수급자의 수급 탈락이나 수급비 삭감으로 이어지고, 실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탈 수급'은 했지만 '탈 빈곤' 할 수 없는 생활을 반복하게 된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가구에서 자란 빈곤층 청년세대에게 복지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빈곤정책이 오히려 빈곤의 대물림을 만드는 것이다. 수급자인 한 장애인 부부는 딸이 이제 졸업해서 취업을 한다며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 아이가 계속 부양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라며 괴로움을 표했다.

### (3)부양의무자 기준은 법리적 정당성이 없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

-국내법에서 친족간 부양의무에 대한 서술은 민법에 존재한다.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부간 혹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로 '부양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이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모 및 성년 자녀, 기타 친족간의 부양의무로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격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민법상의 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는 2차적 부양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1차적 수준의 부양을 요구/강제하고 있다.

-실제 제도 운영상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정당성이 미미한 임의적 기준에 따른 무형의 '부양받을 가능성'을 '간주부양비'라는 이름으로 실제 소득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실제하지 않는 부양비를 수급자에게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은 민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권리를 근거로 수급자에게 '부양받을 의무'를 강제한다.

-즉, 부양의무자기준은 법리적 정당성도 없으며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다.

## 2.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수 있을까?

### (1)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방법 - 법안 내 삭제, 단계별 폐지로 완전 폐지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를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이를 삭제하면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 현 20대 국회 뿐 아니라 19대, 18대, 17대 계속해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5년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화되었다.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급여별 기준선을 각각 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 이후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교육급여는 취학중인 가구원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멀다는 점에서 효과가 미미했다.

-급여별 폐지를 계단삼아 완전 폐지로 나아가면 폐지에 따른 충격을 없애고, 사회적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를 선언하고, 3년의 시기별로 3단계(1단계 주거급여, 2단계 의료급여, 3단계 생계급여, 3년 뒤 전체 급여에서의 완전 폐지)에 걸쳐 폐지하는 것이다.

-폐지의 순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처가 되었으며, 조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절차나 준비가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든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시 3조 1천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건보료조차 체납중인 빈곤가구의 상황, 가족의 병 때문에 가족 전체에 금이 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사

회가 감당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는 타법과의 조율 등의 시간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한다.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예산 3,552,804백만원(118만명, 82만가구), 의료급여 4,799,164백만원(152만명)으로 8,351,968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시 보건복지부는 2014년 기준, 6조 8천억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전면폐지 될 시 필요한 6조 8천억을 현재 예산인 8조 3천억과 합하면 15조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1%다. 부양의무자기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를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며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일이다.

## **(2)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만들 더 좋은 미래**

-부양인식의 변화는 이미 법을 앞지르고 있다. 조사<sup>1)</sup>에 따르면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30%로 2008년 40%에서 대폭 하락, 정부나 정부와 가족이 함께, 부모 스스로 해야한다는 의견은 모두 늘어났다. 특이한 것은 부모 스스로 해결이 11.9%에서 18.6%로 늘어났는데, 개인주의적 경향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동반자살하는 살풍경한 일이 한 해에도 수차례 거듭되는 이유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사회와 복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 수급자의 낙인감을 줄인다. 지금도 최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과 종사자들은 엄청난 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업무에 드는 시간과 노력 중 많은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와 변동에 따른 급여 조정이다. 이는 수급자에게도 큰 낙인감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 더 이상 창피 주는 복지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복지제도를 바로 세우자.

---

1) <2016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2016. 11. 15)



## ※ 잠깐! 부양의무자기준 Q & A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가능하며 해야 한다!**

#### (1)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부정수급자가 늘어날까?

-부정수급자는 그 자체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님. '나태한 수급자'가 대거 발생한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음. 이는 너도나도 수급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가정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정말 그런지 생각해봐야 함.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개인이 아님을 주의)의 기본재산액은 5천 400만원에 불과함. 만약 상당한 자산가가 있다면 단지 수급을 받기 위해 자녀나 타인에게 5천 400만원을 제외한 재산을 완전히 양도할까? 그리고 이미 이런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5년간의 처분재산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며, 이 때문에 거대한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것과 같음.

#### (2) 가족이 해체되고 '효' 사상의 퇴보를 가져올까?

-가난한 이들은 오히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해체되고 있음.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받아 수급자가 된 경우에 혹여나 가족들과 연락을 하면 수급에서 탈락할까봐 연락조차 기피하게 됨.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라 할지라도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수급비가 깎이기도 함.

-이런 경우 빈곤층은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이 심화됨. 오히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가족들이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가난 때문에 약해진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음.

-중산층도 이렇게 높은 수준 (중위소득 초과소득의 30%를 부양비로 산정)의 부양을 하지 못하고 있음. 하물며 빈곤층 가구에게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환상임.

#### (3) 소득이 없는 부유층, 독립 청년세대 등이 대거 유입되는 사태가 있을까?

-이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기준으로 운영됨. 개인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이상이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음.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살더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즉, 소득이 없는 청년세대가 따로 집을 얻어 산다고 하여도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임.

#### (4)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나라가 어려움이 빠질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생계급여 기준 118만명으로, 절대빈곤층의 절반도 포괄하지 못하는 상태임. 2014년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될 시 97만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 7조 8천억의 예산이 발생한다고 함.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고려할 때 총 15조 가량의 예산이 연간 필요함. 이는 국내총생산량인 GDP의 1%에 불과함.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수 있다면 총생산량의 1%를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고 봄.

#### (5) 당신은 가난에 빠진 당신의 가족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빈곤상황은 심각함. 상대적빈곤은 16%로 드러나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5년간 한번이라도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전체의 35%였음. 즉, 빈곤상황에 지속적으로 빠져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빈곤과 탈빈곤을 오가는 가구는 세 가구 중 한 가구에 이르고 있음.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은 사적으로 부양책임을 강제할 수 상황이 아니며, 공공부조와 공적연금 등 사회적 제도를 개선해야 함. 연금 등의 제도가 개선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빈곤한 이들을 돕기 위한 공공부조의 대폭적 확대는 필연적임.